

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9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

2. 개정이유

- 「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의 일부개정(‘26.7.1.시행)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‘정보통신과’가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인 ‘AI정책관’으로 개편됨에 따라,
- 지능정보화 업무의 총괄·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

3. 주요내용

- “지능정보화책임관”을 부시장으로 변경(안 제8조제2항)
- 지능정보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명시(안 제6조제3항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6월 18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FAX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)

○ 주 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정보통신과(우 10932)

○ 연락처 : 031)940-4141 / 팩스 031)940-4149 / 이메일 shlim41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

➡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 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